

건강검진비 지원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	보건소 (국선아, 430-8527)	사업구분	임기 내	유 형	신규
사업기간	2021. 8. ~ 2022. 12.	소요예산	206백만원		
이행현황	정상추진	이행률	80%		

1 공약 최종목표

- 건강검진비 지원(경동맥 초음파 등 검사비)으로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건강수명 연장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8. ~ 2022. 12.
- 대 상 :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합병증 1차 검사결과 이상자)
 -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진안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수 적용)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만성콩팥병, 안저) 검사 결과 이상자
(망막증 환자 또는 사구체여과율 3단계 이상)
- 내 용 : 1차 검사결과 이상자 중 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
(연 1회, 본인부담금 최대 103천원 지급)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구분	계	'20	'21	'22.6.	임기후
계		206			206	
건강검진비 지원 (경동맥 초음파 등 검사비)	국비					
	도비					
	군비	206			206	
	기타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목표

구 분	추진계획	목표(%)
2021	‘21.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결과 송부	20
	‘21.9. ~ 12. · 건강검진비(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 건강검진비(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 · 건강검진비(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 본예산 확보	80
2022	상반기 · 건강검진비(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 시행	100
	하반기 ·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	

5 연도별 추진실적 및 달성률

구 분	추진실적	달성률(%)
2021 3분기	· 건강검진비(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 21. 9. 1. · 민선7기 공약 변경 요청서 제출 : 21. 9. 1. · 건강검진비(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 조례 - 조례 제정 계획 : 21. 9. 8. - 규제예비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 21. 9. 10. ~ 9. 15. - 성별영향 평가서 제출 및 결과 통보 : 21. 9. 10. ~ 9. 16.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9.23. ~ 10.13.) : 21. 9. 23.	50%
2021 4분기	· 조례 사전심사 의뢰 : 10. 18. · 사전심사 결과 회신 : 11.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 11. 17. · 조례규칙심의회 : 11. 22.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원인가결) : 11. 23. · 조례안 최종결재: 11. 23. · 조례안 군의회 제출 : 11. 23. ·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 12. 9.	80%

6 연도별 예산 확보(집행)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구분	계	‘20	‘21	‘22.6.
계		206			206
건강검진비 지원 (경동맥 초음파 등 검사비)	국비				
	도비				
	군비	206			206
	기타				

7 향후 추진계획

- 관내 지정의료기관 사업 안내 및 협조 : 21. 1. ~
- 건강검진비(경동맥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 실시 : 21. 3. ~

8 관련사진



조례안 사전심사 의뢰

조례 사전심사 결과 회신

진안군 보건소

주신 진안군수(가독물보유장)
(영주)

제목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관련 법령상 사무처리 규칙 제6조제2항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붙임: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1부, 1부.

보 건 소 장

주무관: 김연애 부주무관: 박성희 박지현과장: 김민준 2021. 11. 15. 15:00 15:00
 협조과: 김민준 2021. 11. 17. 17:00
 사무: 063-430-4889 2021. 11. 17. 17:00
 주: 063-430-4889 2021. 11. 17. 17:00
 팩스: 063-430-4827 2021. 11. 17. 17:00
 홈페이지: 063-430-4827 2021. 11. 17. 17:00

진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요구서

의안 번호: 2021 - 82

심의안건: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심 의 의 요 구 내 용: 붙임 조례안에 대한 '가', '부' 심의

사 유: 논의하여 상정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함

관 계 법 조 문 및 적용사유: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의법」 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나. 적용사유
 ○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정동맥 검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정동맥 초음파 검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을 감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제 출 자 : 보건소장

진안군조례규칙심의회 의장 귀하

진안군

주신 주민자치 협회
(영주)

제목 2021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지원 결과 회신

중요한 법률질할 사무처리 규칙 제6조제2항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2021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의뢰한」에 대해 별첨과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1부.

심 의 결 과

순번	의안번호	제출부서	의안명	제출일자	심의일자	심의결과
1	2021-74	정동맥초음파	정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2	2021-74	정동맥초음파	정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3	2021-74	정동맥초음파	정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4	2021-74	정동맥초음파	정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5	2021-74	정동맥초음파	정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6	2021-74	정동맥초음파	정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7	2021-74	정동맥초음파	정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8	2021-80	정동맥초음파	정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9	2021-81	정동맥초음파	정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10	2021-82	보건소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2021. 11. 15	2021. 11. 15	승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진안군 보건소

주신 주민자치 협회
(영주)

제목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붙임: 조례안 1부, 1부.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언이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정동맥 검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정동맥 초음파 검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을 감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3조)
 1) 지원대상: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검사결과 이상자
 2) 지원기준
 - 주민등록상 전년도 거주, 가중증위험도 100%이하(가중치 수 적용)
 - 합병증(당뇨병, 신장질환 등) 검사결과 이상자(당뇨병, 신장질환 등) 또는 사후에 위급증상 발생
 나. 지원내용: 정동맥 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의법」 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나. 예산총액: 2021년 예산안 편성 - 비동등계서 적용부 사유: 불합
 다. 사전절차: 여(2021. 9. 1.)
 라. 합 의: 해당없음
 마. 심의결과: 여(2021. 9. 23. ~ 10. 13. / 20일간의 의견 없음)

4. 기타사항
 1) 국제심사: 여(2021. 9. 15.), 해당없음
 2) 정책심사결과: 여(2021. 9. 15.), 해당없음
 사. 조례규칙심의회: 여(2021. 11. 22.), 원안가결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출자: 김민준
 제안일: 2021. 11. 23.

1. 제정이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정동맥 검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정동맥 초음파 검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률을 감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3조)
 1) 지원대상: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검사결과 이상자
 2) 지원기준
 - 주민등록상 전년도 거주, 가중증위험도 100%이하(가중치 수 적용)
 - 합병증(당뇨병, 신장질환 등) 검사결과 이상자(당뇨병, 신장질환 등) 또는 사후에 위급증상 발생
 나. 지원내용: 정동맥 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의법」 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나. 예산총액: 2021년 예산안 편성 - 비동등계서 적용부 사유: 불합
 다. 사전절차: 여(2021. 9. 1.)
 라. 합 의: 해당없음
 마. 심의결과: 여(2021. 9. 23. ~ 10. 13. / 20일간의 의견 없음)

4. 기타사항
 1) 국제심사: 여(2021. 9. 15.), 해당없음
 2) 정책심사결과: 여(2021. 9. 15.), 해당없음
 사. 조례규칙심의회: 여(2021. 11. 22.), 원안가결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동등계서 미검부 사유서

1. 제정사유: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 비동등계서 미검부 사유: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 제3조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중에는 정례회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대상 경우에도 비동등계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의 비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총괄적인 정례회
 3. 비동등계서 미검부 사유: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 2021-2023 300명도 정동맥초음파 검사비 지원 검토서 1부함
 ○ 총사업비: 20,580만원(한번 100%)
 ○ 상충금액: 332,900원 > 307명(미국) 대상자 검토(한번 두 기준)

제정 예산내역 (단위: 원, 단안원외유류 기준)

구분	예산액	비율
총액	46,100	100%
일반회계	5,100	11.06%
특별회계	39,000	84.94%
산정수입금	9,500	20.82%

조례안 최종결재(안)

조례안 군의회 제출